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호 1999

제출연월일: 2024. 7. 19.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의 개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과학·수학
·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융합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하는"을 "수립할"로,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자문단)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 가로 구성된 교육국제화특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 2. 특구의 지정 · 지정해제 및 변경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워계획
-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 의 의견조정
- 6.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 중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를 "교육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교육기본법」의 개정)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학교교육지원위원회) ①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교교육 관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학교교육 관련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학교교육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책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6. 다른 법령에서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7. 그 밖에 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학교교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④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지원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육지원위원 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4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법」의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를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 3.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 가
-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영재교육 진흥법」의 개정)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을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유아교육법」의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를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를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를 "국무회의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을 "따른특정평가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

한 특정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정부는"으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위원회"를 "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회"를 "정부"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를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를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의"로,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의 지원
- 2. 제9조제2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의 지원
-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관하여는"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각각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 ①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제11조(「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를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 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 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를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학교체육 진흥법」의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을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 중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를 한다.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

- 요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 회로 본다.
 - 1. 종전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 2. 종전의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 원회
 - 3. 종전의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

회

- 4. 종전의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 회
- 5.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 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 6. 종전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 위원회
- 7.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 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 8. 종전의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 앙위원회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으로 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 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 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 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 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 항
- 2. 과학·수<u>학·정보 교육 진흥</u> 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융합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 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아

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과학· 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기 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 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 항
- 2.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 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융합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 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u>경우</u>	<u>경우</u>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u>에는</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교육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	
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u>경우에는</u>
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특구 시·도	
지사"라 하다)이 이겨은 들어야	

하다.

② (생 략)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① · ② (생략)
-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 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 ⑧ (생 략)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자문단) 교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 도
 - 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 경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수립할</u>	
협의하여	야

④ ~ ⑧ (현행과 같음)

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 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국제화 특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 도

- 2. 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변경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

 당 부처의 지원계획
-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

 도지사의 의견조정
- 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

-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 당 부처의 지원계획
-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의 의견조정
- 6.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 임명한다.
-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 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생 략)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1	(현
행과 같음)			
2			

---- 교육부장관이 ------

----.

③ (현행과 같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학교교육지원위원회) ①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교육
	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
	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교육 관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u>사항</u>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u>관한 사항</u>
	4. 학교교육 관련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u>관한 사항</u>
	5. 학교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u>사항</u>
	6. 다른 법령에서 학교교육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u>사항</u>
	7. 그 밖에 학교교육 지원과 관

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학교교육지원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 ③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위원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 원은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 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 ④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지원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서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심의 한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등) ①
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	<u>5년마다</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	
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	<u><</u> 삭 제>
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	
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	
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	
<u>다.</u>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	
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 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 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 전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 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 ⑤ (생 략)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
리기준 등) ① <u>다</u>
<u> </u>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⑸ (현행과 같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	
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	ग्रिक्
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	제6조(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	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
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	<u>다.</u>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1. 종합계획의 수립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u>선</u>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	3.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

선

-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

 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

 석・평가
-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

 석·평가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8. (생 략)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 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 의) -------- 사항은 「교육기 본법 _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 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

 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 4. 영재의 보호자
-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삭	제>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					
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					
<u>본계획</u>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					
<u> </u>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					
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 교육부차관					
•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					
<u>족부차관</u>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					

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 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등) ①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u>제9조</u>	「교육
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	교육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육지원위원회"라 한다)의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	③
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	<u>학교교육지원위원</u>
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	회의
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	제9조(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
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 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

 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되도록 한다.

-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2.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 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 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 는 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u>명</u>
-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 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의 수립) ① (생 략)	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②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	
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	
합하여 기본계획안을 <u>작성하고,</u>	<u>작성하</u>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	<u>여야 한다</u> .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	③
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	<u>국무회의의</u>
<u>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u> 심의	
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	
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	⑦
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	
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	- <u>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u> .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⑨ (생 략)	8·9 (현행과 같음)

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 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 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 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 <u>개</u>발
 -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

책

- 마. 산학협력 활성화
- 바. 군 인적자원개발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 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 적 운용에 관한 사항
-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 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 장이 제안하는 사항
-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 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 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 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 | 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 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 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 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 진)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 | <삭 제> 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

<삭 제>

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u>「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 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 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 조 및 제18조 실시하여 야 한다. <단서 삭제>
②
 <u>따른 특정평가</u> 의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 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 1. ~ 5. (생략)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 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 의한 후 심의 · 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 · 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 · 점검을 할 수 <u>있</u>다.
- ④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삭 제>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정부는</u>
<u>수립하여야 한다</u> .

<삭 제>

<u>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u>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분 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협의하여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기단체, 교육·연구기관, 그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

<u>③ 정부</u>
<u>④ 정부</u>
교육·연구기관이나
<u>교육·연구기관이나</u> <u>그 밖에</u>

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과 <u>제6항</u>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u>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u>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 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 정할 수 있다.
 -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
 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

 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 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u>제4항</u>
제	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
	<u>각</u>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1.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u> </u>

2. 제9조제2항에 따른 특정평가

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의 지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u>4.</u>	ユ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약	인정하	는 업무	

② (생 략)

<u>의 지원</u>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현행과 같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	2
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u>제10조</u>	<u>제10조</u>
<u>제1항</u> 에 따른 시·군·구특수	제2항
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	
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	
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	
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0조(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	중요 사항의 심의 등) ① 제5조
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에 따른 국가의 업무수행에 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한 중요 사항은 「교육기본법」
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지원
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	
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u><신 설></u>	②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 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 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 로 각각 정한다.

<u>속으로</u> 시·도특수교육운영위
원회(이하 "시·도특수교육운
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
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
영위원회(이하 "시·군·구특
수교육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③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u>정한다</u>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 ①·② (생 략)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 | ③ ----- 「교육기본 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략)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u>둔</u>다.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대 한 평가
 -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① · ② (현행과 같음)
- 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 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 원위원회"라 한다)의 ----------. ----.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 한 평가
 -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 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 가가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 가가 요청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6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행 혅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⑧ (생 략)

-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 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 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 업 추진

개 정 안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 유)

----- 「교육기본 법」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 지원위원회(이하 "학교교육지 원위원회"라 한다)의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 한 사항의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 업 추진
-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 대표
-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 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u>수 있다.</u>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 ·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 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 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 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 설>

(혂행과 같음)

정

아

개

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

제16조(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 요 사항의 심의 등) ① 학교체 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가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 사 항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2 에 따른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 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시·도 및 시·도교 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 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

-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 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 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 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 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회(이하 "학교체육진흥지
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③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④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
⑤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조	「교육기본법」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서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중앙특수 교육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체육진흥 중앙위원회 총8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13조)
- 통합되는 8개 위원회는 향후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연간 예상 소요액은 최근 3년(2021~2023) 회의개최 수인 평균 1.5회로 계산했을 때, 회의수당 약31.8백만원, 임차료·인쇄비 등 운영비 약32.2백만원, 총63.96백만원 가량임

연번	번 위원회명		위촉직	총합계	3년평균 회의횟수
1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4	16	20	0.3
2	기초학력보장위원회('22.3. 신설)	2	13	15	2.5
3	인성교육진흥위원회	4	16	20	1.3
4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4	11	15	2.0
5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7	8	15	1.7
6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11	11	0.7
7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7	14	21	2.3
8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2	17	19	0.7
	총합계	30	106	136	1.5

※ 산출내역 (8개 분과)

(회의수당) 위촉직위원 106명*20만원(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1시간 초과 시)*1.5회 = 약31,800,000원

(업추비) 136명*1.5회*30,000원=6,120,000원

(임차료) 1백만원*1.5회*8개위원회=12,000,000원

(인쇄비) 1백만원*1.5회*8개위원회=12,000,000원

(다과비) 10,000원*136명*1.5회=2,040,000원

O 다만, 총괄분과 및 전체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재정 운영 소요는 69백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

Ⅲ. 부대의견

O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전혜빈	김지애	이주희	박성민・배동인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지애	044-203-6069	simooluk27@korea.kr